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밖의 관련 상위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 개정 :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7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상위법령 조문위치 이동 반영(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126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 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垔)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 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소관 실·과		도 시 과
입 안 자	과 장	남 병 국
	담 당	김 대 영
	담 당 자	정 한 울 (480-5423)